

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연말정산 시기: 계속근무자 ▶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(소득세법 §134, 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포함 신고·납부)
※ 2025.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(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 10일), 그 외(2월 말일)

총급여액

(연간근로소득·비과세소득)

➔ 근로소득공제 (한도 2,000만원)

근로소득금액
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➔ 인적공제

➔ 연금보험료공제

➔ 특별소득공제

➔ 그 밖의 소득공제

과세표준

기분세율 (6~45%)

산출세액

➔ 세액감면

➔ 세액공제

표준세액공제(13만원)

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·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결정세액

➔ 기납부세액

➔ 납부 또는 환급세액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

기본공제 (p.95)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(1964.12.31.이전 생) 직계비속·동거입양자: 만 20세 이하(2004.1.1.이후 생) 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
추가공제 (p.96)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로우대 공제: 만 70세 이상(1954.12.31.이전 생)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: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 한부모 공제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 적용)

연금보험료공제	●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: 본인 부담액 공제
---------	--

보험료 (p.106) 주택자금 (p.106) 공제산식: ㉠+㉡ (㉠, ㉡ 외국인도 공제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● 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 ㉢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% ● 한도: ㉠+㉡ = 400만원, ㉠+㉡+㉢ = 2000만원·1800만원·800만원·600만원 ● * 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※ 뒷면 참조
---	--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 ●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
----------------------	---

주택마련저축 (p.1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연 30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 ● 공제액: 납입금액의 40%(한도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* 총급여 7천만원 이하
-----------------------	--
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: 종합소득금액 50%) ●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
--------------------	--

신용카드 등 (p.130)	● 총급여액 2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~40%공제(※뒷면 참조)
-----------------------	--

우리사주조합 출연금	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
-------------------	---
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	● 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(한도:1,000만원)
---------------------	---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: 240만원)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p.148) (청년 90%, 청년 외 7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(청년 5년)(연 200만원 한도) ● 대상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)
---	---

기타세액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●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급급 소득세 감면 ● 중소기업 청년근로자·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(내일채움공제)
---------------	--

근로소득세액공제 (p.15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제액: 산출세액의 55%(130만원 초과분은 30%) ● 한도: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74만원~66만원), 1억2천만원 이하(66만원~50만원), 1억2천만원 초과(50만원~20만원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결혼세액공제 (p.160)	●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공제(생애 1회, 2024~2026년 혼인신고자)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자녀세액공제 (p.16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5만원), 자녀 3명 이상(35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) ● * 자녀세액공제 대상: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● 출생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연금저축계좌 납입액 (p.162) (12%·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600만원) ●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 연금저축액포함 900만원) ● * 총급여액 5천5백만원(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)이하 15%,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12%
--	--

보험료 (12%·15%) (p.167)	● 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) 12%(한도 100만원) 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%(한도 100만원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의료비 (p.170) 산식: (㉠+㉡)×15%·20%·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㉠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 특례자(15%)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(20%), 난임시술비(30%) (한도 없음) ● ㉡ ㉠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×3%(한도 700만원) ● * 단 ㉡의 의료비 < 총급여액×3% 인 경우, 그 미달금액을 ㉠에서 차감 후 15%·20%·30% 적용 ● * 산후조리원비용(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, 소득요건 폐지), 시력보정 안경·렌즈(1인당 연 50만원 이내)
---	---

교육비 (15%) (p.175)	● 한도: 본인(전액, 대학원·학자금대출상환액 포함), 대학생(1인 900만원, 대학원 제외),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교생(1인 300만원), 장애인 재활교육 목적 특수교육비(전액, 직계존속 포함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기부금 (p.184) (100/110·15%·25%·30%·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제율·공제순서 ① 정치자금(100/110, 10만원 초과분 15%, 3천만원 초과분 25%) ② 고향사랑(100/110, 10만원 초과분 15%, 기부액 한도 500만원) ③ 특례 ④우리사주조합 ⑤일반(15%, 1천만원 초과분 30%, 3천만원 초과분 40%) ● 한도: 특례(근로소득금액-①-②)×100%, 우리사주조합(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)×30%, 일반(종교단체無)⑦×30%, 일반(종교단체有)⑦×10%+MIN(⑦×20%, 종교단체외기부액) ● * ⑦ = 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-④
---	---

월세액 (15%·17%) (p.200) (외국인 공제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상: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(연 1천만원 한도) ● 공제율: 15%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) 17%)
--	--

※본 자료는 세법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구분	공제요건			
	나이요건*	소득요건* (100만원 이하)	동거요건	
기본공제 (p.95)	본인	×	×	×
	배우자	×	○	×
	직계존속	60세 이상 (64.12.31. 이전)	○	△ (추가형택상 별거 허용)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04.1.1. 이후)	○	×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	×	○	×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
추가공제 (p.96)	장애인(200만)	×	○	
	경로우대(100만)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(54.12.31. 이전 생)		
	부녀자(50만)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
	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		
연금보험료 공제	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
신용카드 등 (p.130)		×	○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
보장성보험료		○	○	
의료비		×	×	
교육비		×	○	
기부금		×	○	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
표준세액공제	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,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

※ (나이요건)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 ※ (소득요건)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 ※ 정착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

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 p.130

구분	내용	
공제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(형제자매 제외)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	
공제율	구분	공제율
	① 신용카드(③,④,⑤제외)	15%
	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(③,④,⑤제외)	30%
	③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 등	30%
	④ 전통시장 ⑤ 대중교통	40%
* ③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		
공제금액	공제액 = [(㉔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) × 15% ~ 40%] ① 신용카드등사용금액(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)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·선불카드	
한도액	기본공제(한도 300만원) + (기본공제한도 초과하는 경우) 추가공제(한도 ① 300만원 + ② 100만원) * 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한도) 기본공제 250만원, 추가공제 ① 200만원 ※ 추가공제: 기본공제한도 초과금액과 ① + 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 전통시장 × 공제율 + 대중교통 × 공제율 + 도서·공연 등 × 공제율 ② '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'23년 사용금액 대비 5% 초과 증가금액 × 10%	
공제 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※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 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(중고차는 10% 가능) ⑦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기부금 ⑧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	

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(www.hometax.go.kr)

■ 제도 개요
○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

■ 일괄제공 서비스 접근 경로
○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연말정산 일괄제공 → (회사) 일괄제공 신청/관리

■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

구분	(회사) 근로자 명단 등록	(근로자) 확인(동의)	(회사) 자료 다운
일정	'24.9.25. ~ '25.1.10.	'24.12.1. ~ '25.1.15.	'25.1.17.(1.20.) ~ 3.10.
내용	소속 근로자 명단 등록	일괄제공 신청내역 및 자료제공 확인(동의)	간소화자료 일괄 다운

※ 근로자 확인(동의) 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 삭제 가능

[주채권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	세액공제
	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조 (p.121)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52조 4 (p.109)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52조 5 (p.109)	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 2 (p.200)
공제 대상	•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(세대주 여부: 과세기간중로일 현재 기준) 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• 국민주택규모 주택 • 대출기관(보훈청 포함)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	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• 기종시가 6억 이하 • 주택에 지대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	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종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※ 외국인 공제 가능	
기타	근로자인 세대주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 공제 가능	세대원이 공제 가능한 경우(아래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 모두 충족시) 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②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③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		
요건	• 청약저축(연 300만원 이하 납입액) • 주택청약종합저축(연 300만원 이하 납입액) • (폐지된) 근로자주택 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	1)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, 전입일(경신, 이후 포함)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2) 거주자(개인) 차입 시 총급여액 5천 이하 근로자가 전입일 등부터 1개월 내에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3.5% 이상 이자율로 차입	•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• 채무자가 차대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• (대환)이전하는 금융회사가 기존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거나,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(상환기간이 최초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)	• 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 이하자 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종시가 4억원 이하 주택 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(전입신고)
대상 주택	(-09년 7월 1일 청약저축의 경우) 가입당시(가입 후 주택취득 시 취득 당시) 기종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 시에도 공제 가능	• 국민주택규모 주택 •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• 규모요건: X('14년부터) 취득당시 기종시가: 6억 이하('19~'23년 차입: 5억 ↓)('14~'18년 차입: 4억 ↓)('13년 이전 차입: 국민주택규모 + 기종시가 3억 ↓) • 오피스텔 제외 • 분양권 가능(무주택자)	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종시가 4억 이하 • 주거용 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 * 부양가족명의의 임대계약 주택 가능(근로자 본인이 월세부담 및 전입신고)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 전액	월세액의 15% (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7%)
공제 한도	합계액 연 400만원 한도 합계액 연 800만원 한도 (• 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처식 분할상환: 2,000만원 • 15년 이상 + 고정금리 or 비거처식 분할상환: 1,800만원 • 10년 이상 + 15년 미만 + 고정금리 or 비거처식 분할상환: 600만원)			월세액 연 1,000만원 한도
증명 서류	• 주택마련저축 납입증서	•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(거주자 차입시) 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	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주택가액 확인서류(공동주택가액확인서 등)	• 주민등록표등본 •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
주의 사항	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취급 기관에 1년 2월까지 제출	•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• 법인, 각종 공제회 차입금 제외	• 주택수 포함: 무허가 주택, 사업용·판매목적 주택, 공동주택(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경우)	•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불가(납세자 선택)

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공제 적용여부]

구분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가능
보장성 보험료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불가
학원비	취학전아동	신용카드 공제 가능
	그 외	신용카드 공제 불가
교육비	교육비 세액공제 불가	신용카드 공제 가능
교복구입비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가능
기부금	기부금 세액공제 불가	신용카드 공제 불가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

- 서비스 오픈일정 2025.1.15. 이후 제공 예정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근 경로
○ 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
- 제공되는 소득·세액공제 항목
○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, 주택자금 등 자료 제공
-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방법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없이 조회 가능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
-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
① 홈택스 홈페이지: 연말정산 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/조회/취소 → 본인인증 신청 or 온라인 신청 or 팩스 신청
② 스텝스 맵: 연말정산 간소화 → 제공동의 신청/취소
③ 세무서 방문: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
※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